#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793

발의연월일: 2022. 12. 8.

발 의 자:인재근·고영인·김상훈

김성환 · 김영진 · 박상혁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양경숙 · 최종윤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상 수가 부족하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취급하는 서식이 서로 상이하고 호스피스 이용 신청 절차도 달라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 법률 제 호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신청"을 "정보 제공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5항·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철회"를 "호스피스 이용신청서, 이용동의서의 정보 등록 및 철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보건복지부는 입원가능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와 호스피스이용 신청 환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통해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신청서를 받은 경우, 호스피스 이용신청서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한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 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이용동의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종합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8조(호스피스의 정보 제공과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 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 신청) ① 보건복지부는 입원가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 능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 와 호스피스 이용 신청 환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 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 여야 한다. 운영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호스 <신 설> 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 (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 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②· ③ (생 략) 과 같음) 장은 <신 설> 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신 설>

④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신 청서를 받은 경우, 호스피스 이 용신청서의 정보를 종합정보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 이 용을 신청한 호스피스대상환자 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 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 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이용동의서를 종합정보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⑦ -----호스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스 이용신청서, 이용동의서의 정보 등록 및 철회----.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센터, 권역 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종합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⑨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